

통고서

1	범칙행위 혐의자	성명(법인명):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: 주소(영업소): 직업:
2	범칙사항	
3	위반조항	「지방세기본법」 제 조 「지방세기본법」 제 조
4	적용사항	「지방세기본법」 제 조제 항제 호 「지방세기본법」 제 조제 항제 호
5	벌금상당액	금 원정 (₩ 원정)
6	몰수 또는 몰취(沒取) 해당물건	
7	추징금 해당금액	금 원정 (₩ 원정)
8	기타 소요비용	금 원정 (₩ 원정)
9	납부장소	위의 제5호, 제7호 및 제8호의 금액을 첨부한 납부서로 ○○○시·군·구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제6호의 몰수 또는 몰취된 물품은 해당 물품으로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위 범칙행위에 대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라 통고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

※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24조제1항에 따라 고발합니다.

통고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○○시·군·구 ○○과 ○○○(☎ 000 ~ 0000)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